

기업 회생 절차 적극 참여를 통한 부실채권 최소화 방안

김 종 서 |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부장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은 부도 또는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을 거쳤음에도 정상화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워크아웃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상하는 도중에도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이런 사례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는 부실기업의 정상화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시점과 누가 주도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통상 워크아웃은 부도 전에 금융기관(채권단)이 주도하여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구조조정과 재무 개선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 회생 절차는 대개의 경우 경영진이 부

도난 후 회사 갹생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워크아웃보다 회생 절차에서 채권 회수나 회사 정상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회생 절차를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업 회생 신청 업체 증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도 부동산 경기 추락 등 그 영향을 받고 있다. 2009년 초 금융감독원과 채권 은행들은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 89개사를 발표한 이래 2010년 65개사, 2011년 32개사, 2012년 36개사를 각각 발표하였다. 당초 신용 위

험 평가 결과 C등급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D등급은 퇴출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이 된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특히 D등급을 받은 업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 따른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 발표된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서 건설업종(시행사 포함)이 17개사로 절반 가량이 되는 등 건설업계 전체가 회생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중 연도별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조합원들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경영 정보

〈표 1〉 회생 개시 신청 및 인가 현황

연도	신청	인가	조합 동의	폐지	종결	업무 거래
2006	6	5	-	5	1	-
2007	14	7	2	12	2	1
2008	24	15	2	11	4	3
2009	36	21	1	19	3	1
2010	36	14	1	21	4	3
2011	34	17	8	16	2	1
2012. 12. 18	32	6	6	8		

주 : 1) 회생 폐지는 당해 연도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를 포함.
2) 업무 거래는 회생 절차 종결된 조합원 중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임.

200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신청 업체 수가 매년 30여 개사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생 업체의 증가는 보증 대금금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회생 계획이 인가된 업체의 회생 계획에 대한 동의 비율을 보면 2011년부터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들어서는 회생 계획이 인가된 6개사 모두 회생 계획에 동의하였다. 회생 계획에 동의한 사례가 1, 2건에 불과했던 2010년 이전과 명확히 대비됨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조합이 건설업체의 회생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유와 회생 절차 진행 과정상 채권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채권 침해 최소화 위한 회생 계획 동의

건설금융 전문 보증기관인 조합의 회생 업체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 및 업무거래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4월 25일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2011년 4월 25일 이전 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에서 회생 계획안 동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회생 계획안의 권리 변경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원금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부(不) 동의하였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회생 계획안이 일반적이라 사실상 회생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회생 계획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동의는 보증기관인 조합에 대한 파산법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하고, 회생 업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

았다. 이러한 건설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11년 4월 25일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 및 업무 거래 기준을 보완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다. 즉, 조합이 신고한 채권 중 원금에 대한 면제(출자 전환 채무 포함)가 없는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변제 기간, 이자 등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 계획상 영업 활동·자산 매각·신규 차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실현 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조합이 보증한 사업장의 계속 수행으로 보증금 대급이 감소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동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 계획의 권리 변경 조항에 따라 회생채권 등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생 계획에 부동의하는 조합 등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보증기관들이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모럴 해저드라는 비판을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권리 변경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다시 정상적인 업무 거래를 한다면 이 또한 조합으로서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서 조합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업무 거래 조건 등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회생 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인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

다. 이로써 조합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생 절차에서 조합의 동의를 받아 보다 쉽게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확정 채무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회생 계획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동의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동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자금관리위원 파견

권리 변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회생 계획에 일관되게 부동의하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동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회생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권관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합은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 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금관리위원의 파견에도 적극적이다.

자금관리위원제도는 CRO(Chief Reconstruction Officer, 구조조정 담당임원)와 함께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2011년 기업 회생 절차를 6개월 내에 종결하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절차적 형식은 채권자협의회가 자금관리위원 파견을 요구하면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 파산법원에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 허가에 따라 대표 채권자와 관리인이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비용 부담으로 1~3인의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통용하고 있는 자금관리약정서에서 자금관리위원의 업무는 자금관리 점검, 법원 허가 신청의 사전 점검, 회생 계획안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주요 사업 현황 파악 등으로 정하고 있다.

2011년 11월 17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임광토건에는 대표 채권자인 우리은행과 조합에서 각 1인의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여 회생 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고 보증사고 발생 예방 측면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등 자금관리위원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채권관리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이후 풍림산업, 남광토건, 벽산건설, 삼환기업, 극동건설 등에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사전적 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의결권 확대 필요성 및 추진

의결권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확정된 액수로 정해진다.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는 없고,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회생 계획

안의 확정을 저지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권리 행사 수단이다. 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기관들이 가지는 장래 구상채권의 규모가 회생 회사의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파산법원은 채무자가 도산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 대부분인 우발채무로서 채권액 전체가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을 평가하여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한다. 실무에서는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 조합이 신고한 채권은 전부 시인하되 미확정 채무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증 대급금이 확정된 경우 이를 회생 회사의 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생 채권(또는 회생담보권)의 변경 신고를 통해서 의결권을 인정받고 있어 신고·시인된 채권액보다 극히 적은 액수만을 인정하고 있다.

장래 구상채권의 보증사고 발생 여부는 주채무자인 회생 회사의 의사와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예컨대 회생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잔여 공사를 시공해도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계약보증(또는 공사이행보증)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용만 지출

경영 정보

해야 하는 하자보수를 포기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종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의결권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조합의 의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무조건적인 부동의로 회생 계획안을 의결에 부칠 필요가 없는 사례가 빈번하자 의결권 인정에 매우 인색하게 되었다. 조합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현재에는 적절한 의결권 인정이 회생 회사의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기관과 연대하여 의결권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파산법원에 조합은 부도 등 부실업체의 보증 대금금이 당해 회사의 보증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출하여 의결권 인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파산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제3회 관계인 집회기 일 이전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즉 보증 채권자의 보증금 청구 또는 보증 불이행 통지가 있는 보증금액 상당액만이라도 의결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합의 적극 참여가 유의

조합은 1982년 공영토건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18일 현재까지 397건(동일 회사가 여러 번 신청한 경우 포함)의 회생 사건이 있었으며, 그 중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된 사례는 61개사에 불과하다. 2006년 이후 사례를 보더라도 총 182개사 중 회생 계획이 인가된 경우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85개사에 불과하고, 그 중 정상적으로 회생 절차가 종료한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 16개사뿐이다. 여기에 회생 절차가 종료된 업체 16개사 중에서 조합과 일부 또는 전부 업무 거래를 재개한 경우는 9개사로 전체 회생절차 신청 회사 대비 5%, 회생 절차가 종료된 회사 대비 5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의 건설회사들 중 약 30%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100위 이하 중견 회사의 경우에도 상당한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에는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에 있거나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었다. 회생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기존 경영권을 박탈하지 않고 회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패스트트랙제도의 도

입으로 절차 진행이 신속해지면서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으로서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채권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조합은 과거와 달리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회생 계획안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를 하고 있고, 그 가시적인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금관리위원의 보증사고 예방 활동과 회생 회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인가 후 조속한 회사 정상화 및 업무 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보증 대금금 발생 최소화에 상호 공감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시 예상보다 보증사고가 현저히 적게 발생하고 있다. 회사로서도 조합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질수록 대주단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워크아웃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합의 채권관리 측면에서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에서조차 조합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건설업계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할 것이어서 향후 회생 절차에서 조합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리라 기대된다. CERIK